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20. 12.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정보기관개혁소위원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를 대표하여)

목 차

1.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신원조사 중심)	3
2. 현행 신원조사에 관한 규정 및 그 내용	5
3. 관련된 「헌법」 규정 및 법리 등	14
4.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무효이며 위법 (법리적 문제점)	18
가.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무효이며 위법	18
나. 비공무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도 위헌·무효이며 위법 ..	19
다. 국정원이 공무원 등의 충성심 등을 조사하는 것도 위헌·위법	19
라. 위법수집정보	20
5. 국정원 신원조사의 현실적 문제점	20
가. ‘신원진술서’가 ‘존안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0
나. 국정원이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21
6.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개선방안) ..	22
가.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22
나. 국정원 신원조사의 폐지 방법	22
7.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22

1.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신원조사 중심)

‘신원조사’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신·구 조문 대비 형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목적 (제1조)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제3조의2 (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현 행	개정안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 1. 14.> 1.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안 업무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4.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평가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각급 기관 소속 공무원 등의 교육	제3조의2(보안 기본정책 수립 등) 국가정보원장은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안 업무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 2. 보안 업무 수행 기법의 연구·보급 및 표준화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보안 업무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 4. 각급기관의 보안 업무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따라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의 확인 및 그 결과의 분석·평가 5. 비밀 및 국가보안시설·국가보호장비의 보호와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측정.

6. 그 밖에 각급기관에서 수행하는 보안 업무의 지원	<u>신원조사, 보안사고 조사 및 대도청 점검</u> <u>· 보안교육· 컨설팅 등 각급기관 보안업무</u> <u>지원</u> 6. 삭 제
-------------------------------	---

다. 제36조 (신원조사)

현 행	개정안
<p>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p> <p>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p> <p>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무원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u>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의</u>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원조사를 한다.</p> <p>② <u>관계 기관의 장은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해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u></p> <p>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무원 임용 예정자(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인원으로 한정한다)</u> 2.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삭 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삭 제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u>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u>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제37조 (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현 행	개정안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마. 제45조 (권한의 위탁)

현 행	개정안
제45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장관에 대한 위탁은 군인·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에 군사보안에 관련된 인원의 신원조사로 한정한다.	제45조(권한의 위탁) ① 국가정보원장은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국방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현행 신원조사에 관한 규정 및 그 내용

현행 신원조사에 관한 규정을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크게 ①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② 국회 정보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③ ①과 ②를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④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즉 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를 나눌 수 있다.

가.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신원조사 관련 규정

1) 국가정보원직원법

제8조의2(신원조사) ① 원장은 임용 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제1항과 관련된 사항과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조의5(신원조사)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 대상자

2.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원장이 정하는 사람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방법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장은 신원조사 계획을 사전에 고지(告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다.

2. 원장은 신원진술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증명서와 그 밖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원장은 제2호의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원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3) 위헌·위법 문제 소지 적음 : 국정원직원에 관한 신원조사는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적은 편이다. 우선 법리적으로 볼 때, 법률인 국정원직원법에서 신원조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방법·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공무원·비공무원 등에 관한 신원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 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현실적으로 볼 때, 국정원직원에 대하여 국정원 자체적으로 신원조사를 하는

것에 대하여 국정원직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에서 그것에 대하여 문제 제기를 할 이유는 적어 보인다. 따라서 이 의견서에서는 원칙적으로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국회 정보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국회 정보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하여는 법률인 「국회법」 제54조의2 제3항에서 ‘정보위원회의 활동을 보좌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나, 이 건 보안업무규정과는 직접 관계가 없으므로 이 의견서에는 제외한다.

다. 위 가.나.를 제외한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1) 법률 : 규정이 없다.

즉, 위 가.와 나.의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과 국회법이라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신원조사가 행해지고 있으나, 국가정보원직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과 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에 관하여는 법률에 아무런 근거 규정이나 위임규정이 없다.

2)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6조(신원조사)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 14.>

1. 공무원1) 임용 예정자

2. 비밀취급 인가 예정자
3. 삭제 <2020. 1. 14.>
4.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5.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를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원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람이나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7조(신원조사 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의 공무원 및 동등한 직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예정자
2. 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부시장 및 각 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의 행정부지사
3. 판사 신규 임용예정자
4. 검사 신규 임용예정자
5. 국·공립대학교 총장 및 학장
6. 공무원 임용예정자인 외국인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이 국가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람

② 국방부장관은 군인, 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의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7.>

③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원조사의 대상인 사람을 제외한 사람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하고,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람에 대한 신원조사를 관계 조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
- 1) 달리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여기의 '공무원'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입법부, 사법부 등의 모든 공무원이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 2) 3급 이상에 대한 신원조사는 국정원이 하고 4급 이하는 경찰청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판사·검사의 전부에 대한 신원조사를 국정원이 하는 점, 4급 이하 신원조사 통계자료 등을 국정원이 확보하고 있는 점,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이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의견서에서는 신원조사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국정원'으로 표현한다.

제57조(요청절차)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 대상자 명단(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제58조(신원조사 사항) 신원조사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임용분야 및 취급 업무에 따라 신원조사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2.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친교 인물
4. 정당 및 사회단체 관련 사항
5. 국적 변동 내역
6. 학력 및 경력
7. 가족관계
8. 재산(「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등록대상재산을 포함한다)
9. 범죄경력 및 상벌 내역
10. 인품 및 소행
11. 병역사항(「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병역사항을 포함한다)
12. 해외 거주 사실
13. 그 밖의 참고사항

제59조(신원조사결과의 처리) ① 국가정보원장(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원조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신원조사사회보서의 양식에 따라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3. 17.>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요청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을 중요 보직에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안대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3. 17.>

제60조(조회 및 협조) ①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에게 특정한 사실의 확인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7.>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4) 연혁 등

위 보안업무규정의 신원조사 관련 내용은 1964. 3. 10. 보안업무규정이 제정될 때부터 신설되었으며, 현재까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 규정이 신설될 당시에는 신원조사를 ‘중앙정보부장’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제32조), 그 이후 1981. 10. 7. 개정 시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1999. 3. 31. 개정 시 ‘국가정보원장’에게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위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의 신원조사 관련 내용도 1964. 6. 30. 대통령훈령 제4호로 제정·시행될 때부터 있었으며, 그 이후 현재까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약 56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5) 행정부 (훈령)

위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근거로 각 부처별 시행세칙이 훈령의 형태로 제정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신원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과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국무조정실훈령)

제17조(신원조사 및 보안서약서 징구) ① 각 기관의 인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신원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1. 규정³⁾ 제33조 및 규칙⁴⁾ 제56조 제1항의 해당자

3) 보안업무규정을 말하며(시행세칙 1조), 이것은 아래의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도 같다..

2. 신규채용 예정자

3. 국가보안시설 근무자

4. 연구기관 등의 비밀취급예정자, 보호구역 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암호자재 관리자

5. 비정규직원으로 국가보안목표시설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단, 2개월 미만 상주하는 비정규직원에 대하여는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신원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기타 보안업무상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조사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 내에 상주하게 할 수 없다. 단, 비정규 직원 채용 시에는 비밀취급, 통제구역 등 보안관련 분야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 등의 경비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자체내규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한 후 채용할 수 있다.

제18조(신원조사 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조사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그 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 또는 진출자는 신원조사대장에 퇴직 또는 진출일자를 기록하여 적선으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 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②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교육부훈령)

제6조(신원조사)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는 임용 전 또는 인가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 회보사항을 신중히 고려하여 임용 또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7조(신원조사의 대상) 신원조사의 대상이 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규정 제3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2. 사립학교 교직원(학교의 장 포함,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 학교법인 임직원

3.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및 교육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4.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의 임직원 및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등록된 단체의 임직원

제8조(신원조사의 요청) ① 규정 제36조에 따른 신원조사의 요청은 각급 기관별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부서에서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무원 임용예정자 및 비밀취급인가 예정자는 임용 또는 인가예정기관의 인사담당부서

2. 제7조 제2호에서 계약제 사립 교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

가. 사립대학의 교직원(총·학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 이사장

나.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직원(교장 포함) 및 학교법인 임직원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이사장이거나 사립학교 경영자. 단, 사립학교 경영자는 경영학교의 1차 감독기관으로서 해

4)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말하며(시행세칙 1조), 아래의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도 같다.

당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

다. 사립 유치원 교직원(원장 포함)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3. 제7조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임원은 초·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른 1차 감독기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주무부서, 그 외의 직원은 법인이 사장 또는 단체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원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요청해야 한다.

1.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 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3.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붙인다)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각 1부

5. 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 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 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제9조(신원조사 회보서 관리방법)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하며 타 기관으로 전출된 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는 그 전출기관으로 인사기록 서류와 함께 이송하되 퇴직자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을 이용하여 개인의 인사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신원조사 회보서를 별도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교원 및 임직원에 대한 신원사항 관리)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원사항은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원조사 요청기관에서 관리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14조(신원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보안담당관 및 산하기관 분임보안담당관은 규정 제36조 및 규칙 제56조부터 제58조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규정 제36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 05. 01>

2. 공정거래위원회 신규채용 예정자

3. 산하기관의 비밀취급예정자, 보호구역 근무예정자, 보안장비 및 자재 관리자

4. 비정규 직원으로서 기관 내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5. 그 밖에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회보 이전에 직원을 채용하거나 기관 내에 상주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비정규 직원의 채용 시에는 보안상 특수 분야에 근무하는 자(비밀취급, 통제구역근무, 경비근무, 기타

기관장이 필요로 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이 생산하는 신원조회 회보서에 의거 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용 후 15일 이내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비근무자 등에 대하여는 자체 내규에 의하여 신원조사에 갈음하는 조치를 취한 후 채용할 수 있다.

제15조(신원조사의 요청절차) 신원조사는 규칙 제57조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신원대장의 비치) 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원대장은 임용권을 가진 기관 단위별로 비치하고 항시 현재원과 일치되도록 기록 관리하고 비밀취급인가 및 제반 인사관리의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신원대장은 인사부서의 장이 부서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17조(신원조사회보서의 관리) ① 신원조사회보서는 접수와 동시 신원대장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하고 타 기관으로 진출된 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 기록서류와 함께 그 진출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퇴직자 또는 진출자는 신원대장 비고란에 퇴직 또는 진출일자를 기록하여 붉은 글자로 삭제하며 퇴직자 신원조사회보서는 퇴직자 인사기록서류와 함께 관리한다.

제18조(해외출장자 및 외국인 고용원에 대한 보안관리) ① 보안담당관은 소속 직원의 30일 이상 해외출장 또는 장기 유학 시에는 공무원증 회수보관 및 해당 직원에 대한 보안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장기의 해외출장이나 파견 등으로 비밀취급이 불필요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비밀취급인가증을 회수 파기 처리하여야 한다.

③ 업무상 자문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신원조사 관계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분임보안담당관은 소속 부서에서 고용할 외국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무 중 알게 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중이나 계약기간 만료 후에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책임과 피고용인 업무의 한계 설정 등 보안유의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

⑤ 해외출장 인사명령이 발령된 직원은 출장 전 해당부서 및 지방사무소와 산하기관 분임보안담당관 주관 하에 별지 제32호 서식에 따른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 보안교육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 보안담당관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신원 특이사항 심사제도)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보상 유해한 사항이 발견된 사람에 대한 신규 임용, 보직 등 주요 인사사항은 보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청와대 등 : 청와대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 안보실 등 근무자에 대해서도 훈령 등의 형태로 신원조사가 행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6) 신원진술서의 기재사항 (국정원 신원조사의 현실적 의미)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신원진술서’에 공무원 본인의 직장전화, 자택전화, 휴대폰, 이메일과 그 가족·교우·보증인·친교인물의 주민번호·직업·직책 등을 적어서 국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입법부, 행정부(청와대 포함), 사법부 등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임용될 때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본인과 그 가족·교우·보증인·친교인물의 중요 개인정보가 국정원에 제공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급 이상은 국정원이 하고, 4급 이하의 경찰청 등이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경찰청이 신원조사 월별통계를 국정원에 제출해야 하고, 경찰청의 3급 이상 공무원이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4급 이하 공무원의 신원진술서도 국정원이 확보한다고 할 수 있다.

3. 관련된 「헌법」 규정 및 법리 등

가. 공무담임권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공무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등).

공직자선발에 관하여 능력주의에 바탕한 선발기준을 마련하지 아니하고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 예컨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1999. 12. 23. 98헌바33).

헌법재판소는,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 총장후보자 선정과정에서 후보자에 지원하

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기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총장후보자에 지원하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도록 하고 있는 ‘전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
자 선정에 관한 규정’(2014. 6. 13. 훈령 제1753호로 개정된 것)은 기탁금을 납입할 수 없거나
그 납입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
(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나.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에는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면
서 그 활동의 내용·태양 등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직업활동
의 자유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두38560 판결 등).

직업선택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생활의 터전이 되고 각
자의 개성을 발휘하고 인격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민이 선
택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직업은 그것이 공직이든 아니든 국가는 이를 최대한으로 보장
할 의무가 있다(헌재 2002. 10. 31. 2001헌마557).

다.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
이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나 거소를 설정하고, 또 그것을 이전할
자유를 말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거주·이전의 자유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권리이자 이동의 자유로운 보장의 확보를
통하여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인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진 기본권이므로 최대한 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두10846 판결).

라.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된다(헌재 2019. 12. 27. 2018헌바130).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된다(헌재 2016. 7. 28. 2016헌마109, 헌재 2016. 6. 30. 2015헌마36).

헌법재판소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2015. 3. 27. 대통령령 제26163호로 제정된 것)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 가운데 ‘4·16세월호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부분, 즉 ‘이의제기금지조항’은 기본권 제한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법률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청구인들에게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일체의 이의 제기 금지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마. 법률유보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법치주의는 법률유보원칙, 즉 행정작용에는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원칙을 그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9. 3. 선고 2016두

32992 판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국회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한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등).

이와 같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하위법령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7. 6. 29. 2015헌마654 등).

바. 포괄위임금지원칙

1) **의의** :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2) **무효** :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내용을 규정한 대통령령은 그 자체로 무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3) 위법 : 무효인 대통령령 조항에 기초한 처분은 그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5. 8. 20. 선고 2012두23808 판결).

4.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무효이며 위법 (법리적 문제점)

가. 공무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위헌·무효이며 위법

위 2. 다.에서 본 바와 같이, 국정원직원과 국회 정보위원회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과 대통령훈령인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을 기본규정으로 하여 각 부처 훈령을 근거로 실시되고 있다.

위 3. 가.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해당 공직이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기준삼는 것으로서 ‘신원조사를 거부하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또한 위 3. 라.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규정한 위 대통령령·훈령 등은 신원조사를 받지 않을 자유를 가지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에게 신원조사를 받을 ‘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한다.

그리고 위 3. 마.와 바.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규정한 위 대통령령·훈령은 ‘법률의 근거와 위임 없이’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의 공무담임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위 3. 바.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법률의 근거와 위임 없이 신원조사를 규정한 대통령령·훈령의 신원조사 규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대통령령·훈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신원조사’는 ‘위법’하다. 다시 말하면, 국정원이 1964년부터 56년간 해온 신원조사는 모두 무효이며 위법하다.

나. 비공무원에 대한 국정원의 신원조사도 위헌·무효이며 위법

위 3. 나.와 다.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정부 청사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신원조사를 받도록 하고 신원조사를 받지 않으면 상주 또는 출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직업활동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

또한 위 3. 라.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규정한 위 대통령령·훈령은 신원조사를 받지 않을 자유를 가지는 비공무원에게 신원조사를 받을 ‘의무를 부담’ 시킴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도 침해’한다.

그리고 위 3. 마.에서 본 법리에 의할 때,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규정한 위 대통령령·훈령은 ‘법률의 근거와 위임 없이’ 비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함으로써, ‘기본권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가 무효·위법인 것은 위 가.의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 부분과 같다.

다. 국정원이 공무원 등의 충성심 등을 조사하는 것도 위헌·위법

위 대통령령·훈령은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 조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도 어느 법률도 공무원 등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할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충성심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것도 위헌이고 위법이다.

라. 위법수집정보

국가‘정보’원은 기관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정원이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진 정보의 거의 대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헌·위법인 신원조사에 의해 수집된 정보, 즉 ‘위법수집정보’라고 생각된다.

5. 국정원 신원조사의 현실적 문제점

국정원의 신원조사에는 위에서 본 헌법 위반의 문제점 외에 다수의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몇 가지만 보기로 한다.

가. ‘신원진술서’가 ‘존안자료’의 근거가 될 수 있다.

1) 「안기부 대해부 4 존안카드」(한겨레, 1997) : <한겨레>는 1997. 3. 17. ‘안기부 대해부 4 존안카드’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안기부가 각계인사의 인물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알려진 비밀이다. 존안자료로 불리는 이 인물 정보는 엄밀히 말하면 사찰의 결과물이다. 안기부 전직 실장급 간부는 “존안자료야말로 안기부가 가진 힘의 원천이다”고 말한다. 안기부는 10만 명이상의 존안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사무관급 이상 행정 사법 입법 공무원은 임용 순간부터 기록이 시작된다. 존안자료가 A4 종이로 1백 쪽 분량이 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20년이 지난 일도 빠짐없이 기록돼 있다. 고위직으로 갈수록 존안카드는 어느새 ‘살생부’로 둔갑하게 되고 그 ‘살생부’를 작성하는 안기부원은 염라대왕 같은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수십년간 자기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인 자료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심장을 겨누는 ‘비수’로 다가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2) **신원진술서 → 존안자료** : 위 1)의 내용을 볼 때,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위해 제출하는 ‘신원진술서’의 기재항목과 존안자료 항목 사이에는 상당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이 신원진술서가 ‘존안자료’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위 2)에서 본 신원진술서 양식을 보면, 그것을 항목별로 국정원에 있는 컴퓨터(PC)의 존안자료 항목에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존안자료가 작성될 정도로, 거의 모든 항목이 망라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임용 전에 신원조사를 받아야 하고 신원조사를 받기 위해 신원진술서를 작성하여 국정원에 제출하는데, 이 내용이 위 1)에서 본 <한겨레>의 보도 내용 중 ‘행정 사법 입법 공무원은 임용 순간부터 (존안자료) 기록이 시작된다.’는 내용과 정확히 부합한다.

나. 국정원이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신원진술서를 토대로 작성·업데이트된 존안자료 내용을 활용한다면 국정원이 대한민국 주요 공무원 등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공무원 본인에 관한 사항이나 가족, 친인척, 친교 인물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공무원 본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가족, 친인척, 친교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청와대에서 국정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의 민정수석, 비서관, 행정관 모두 국정원이 신원진술서(존안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직무수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정원 예산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국정원에 불리한 방향으로의 직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다. 이것은 법무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6.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개선방안)

가.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즉시 폐지되어야 한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국정원의 문제점은 바로 ‘신원진술서’에 있다고 본다.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인물)에 관한 것이고, 대한민국 공무원 등의 신원진술서는 ‘신원조사’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운 매우 소중한 정보이다. 따라서 신원조사를 폐지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신원진술서를 계속 입수하도록 함으로써, (이미 그만 둔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업무를 계속 하라고 등을 떠미는 것과 같다.

나. 국정원 신원조사의 폐지 방법

국정원의 신원조사를 폐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위 2.에서 본 신원조사 관련 규정, 즉 「보안업무규정」 제36조, 제37조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제56조 내지 제60조를 삭제하는 것이다. 이 2가지가 삭제되면 각 부처 훈령 등의 신원조사 규정도 따라서 삭제될 것으로 본다.

7. 보안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가. 위 3. 바.에서 본 바와 같이, 법률의 시행령(대통령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9. 3. 선고 2016두32992 판결 등).

나. 개정안에 따른 신원조사도 위헌·무효이며 위법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개정안 제36조는 현행 내용에 비해 신원조사의 대상을 일부 축소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의하더라도 국정원의 신원조사는 여전히 위헌·무효이고 위법하다.

즉, 개정안 제36조 제3항의 대상자 중 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헌법상의 법률유보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공무원의 공무담임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비공무원에 대한 신원조사는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하여 비공무원의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법률의 근거와 위임 없이 신원조사를 규정한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은 무효이고, 이에 따른 신원조사는 위법하다.

다. 개정령(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 ①

개정안에 의하여도 신원조사는 여전히 위헌·무효이고 위법하므로 개정안의 신원조사 관련 규정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즉, 제3조의2 제5호에서 ‘신원조사’ 부분, 제36조

전체, 제37조 전체, 제45조 제1항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라. 개정령(안)에 대한 구체적 의견 ②

「보안업무규정」의 명칭을 대한민국 법률서에 맞게 「국가정보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보안업무규정의 현행 제1조나 개정령(안) 제1조 모두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2항(제4조제3항)에 따라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가정보원법과의 관계를 명확히 밝혀 주는 의미에서 「국가정보원법 시행령」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헌법 제75조에 의하면 ‘대통령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발령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이 어느 법률에 관한 것인지를 그 명칭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본다⁵⁾.

그리고 대통령령의 명칭에 어느 법률의 시행령인지를 명시해야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헌법상의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데 적합하다고 본다⁶⁾.

5) 서울고등법원 2002. 2. 1. 선고 2001누10631 판결은 대통령령은 ‘시행령’의 형식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기도 하였다.

6)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대통령령의 명칭이 ‘시행령’의 형식이 아닐 경우에는(이 건 보안업무규정과 같이) 그 헌법적·법률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이 될 것이다.